

의안번호	제334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6월 일 (제 311 회)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발 의 자	김도경 의원외 6명
발의연월일	2012년 6월 1일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김도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4
----------	-----

발의년월일 : 2012년 6월 1일

발의자 : 김도경,손문규,심기보,
노광기,김광수,장선배,
강현삼

1. 제정이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살예방 기본정책(안 제2조)
- 도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3조)
-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안 제7조)
- 자살예방센터 설치(안 제8조)
- 자살통계 분석, 홍보·교육(안 제9조, 제10조)
-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 민간단체 지원(안 제12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별첨
- 예산 수반(비용추계서) : 별첨
- 집행기관 협의 여부 : 여
- 입법예고 여부 : 여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도 차원의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충북도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주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은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3.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예방방지 프로그램 운영
5.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자살예방센터 운영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충청북도 3급이상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 중 교육청 관련 공무원 1명을 당연직으로 둔다.

1. 자살예방 전문 조사·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등
3.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④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

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도지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살통계 분석 등) ① 도지사는 주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교육 등)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와 시장·군수, 산하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이들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주민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 (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 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자살예방의 날)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4. 독극물 판매정보
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한다.

⑤ 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정신보건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신보건센터의 설치를 위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자살예방사업을 통해 도민이 생명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 자살 및 우울증에 대한 편견해소 등 인식개선 유도

2. 비용 발생요인

-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비 지원
-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광역형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

3. 관련조문

-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정신보건센터의 설치)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자살예방·상담교육)

4. 비용 추계결과

-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비 : 1,831,200천원
- 광역정신보건센터지원 : 800,000천원
-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 270,200천원
- 아동청소년사업비 지원 : 100,000천원
-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비 지원 : 650,000천원
- 재원조달 : 국비 및 도비 자체재원 사용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작성자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이 주 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1. 자살 및 정신보건사업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입		-	-	-	-	-	-
-		-	-	-	-	-	-
세출		2,970,300	3,196,400	3,261,400	3,521,400	3,651,400	16,600,900
표준형정신보건센터운영		1,831,200	1,831,200	1,831,200	1,831,200	1,831,200	9,156,000
알코올상담센터운영		135,100	270,200	270,200	270,200	270,200	439,075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104,000	195,000	260,000	520,000	650,000	1,729,000
광역정신보건센터운영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재원조달		2,970,300	3,196,400	3,261,400	3,521,400	3,651,400	16,600,900
의존 재원	소계						
	국고 보조금						
자체 수입	소계						
	지방세						
	세외수입						
	도 비	1,437,865	1,503,630	1,536,130	1,666,130	1,731,130	7,874,885
자체재원							
기금		1,433,150	1,500,700	1,500,700	1,500,700	1,500,700	7,435,950
시·군비		99,285	192,070	224,570	354,570	419,570	1,290,065
기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2. 자살예방 생명존중사업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입		-	-	-	-	-	-
-		-	-	-	-	-	-
세출		104,000	195,000	260,000	520,000	650,000	1,729,000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104,000	195,000	260,000	520,000	650,000	1,729,000
재원조달		104,000	195,000	260,000	520,000	650,000	1,729,000
의존 재원	소계						
	국고 보조금						
자체 수입	소계						
	지방세						
	세외수입						
	도 비	52,000	97,500	130,000	260,000	325,000	864,500
자체재원							
기금							
시·군비		52,000	97,500	130,000	260,000	325,000	864,500
기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